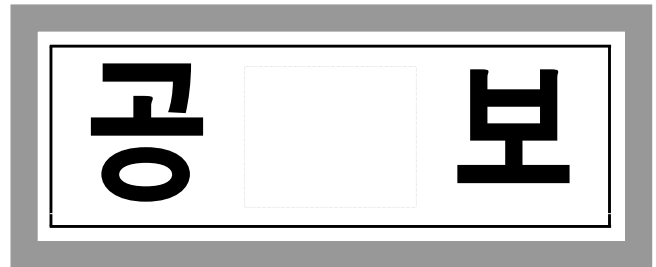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1193호 2019년 2월 1일(금)

고 시

- 속초 도시관리계획(조양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
-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5

속초 도시관리계획(조양1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속초 도시관리계획(조양1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1월 30일

속 초 시 장

1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	면 적 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31	조양1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속초시 조양동 1572번지 일원	속초시 조양동 1572번지 일원	43,527	증) 67.5	43,594.5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위 치	면 적(㎡)	결 정 사 유
변경	31	속초시 조양동 1572번지 일원	43,594.5	◦ 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1) 용도지역·용도지구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가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43,527	증) 67.5	43,594.5	100.0	
주거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43,527	증) 67.5	43,594.5	100.0	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위 치	용도지역		면 적(㎡)	용적률	결 정 사 유
		기정	변경			
31	속초시 조양동 1572번지 일원	제3종일반 주거지역	제3종일반 주거지역	43,594.5	300% 이하	◦ 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

2)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가) 교통시설

■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중로	1	31	20~36.4	보 조 간선도로	603 (276)	조양 1039-3대	조양 1226-2답	일반 도로	1979.4.19. (강고제72호)	
변경	중로	1	31	20~36.4	보 조 간선도로	603 (276)	조양 1039-3대 (조양 1575도)	조양 1226-2답 (조양 1575도)	일반 도로		선형 변경
기정	중로	3	13	12	보 조 간선도로	658 (87)	조양 1409-33대	조양 1313-5답	일반 도로	1987.2.17. (강고제87-12호)	
변경	중로	3	13	12	보 조 간선도로	658 (87)	조양 1409-33대 (조양 1581도)	조양 1313-5답 (조양 1581도)	일반 도로		선형 변경

※ ()는 사업구역내 연장

■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1-31	중로1-31	- 선형변경 - 폭원 : 20~36.4m(변경없음) - 연장 : 603m(276m)(변경없음)	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조정
중로3-13	중로3-13	- 선형변경 - 폭원 : 12m(변경없음) - 연장 : 658m(87m)(변경없음)	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조정

※ ()연장은 사업구역내 연장

나) 공공공지

■ 공공공지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⑫	공공공지	조양동 1573	1,744	감) 52.3	1,691.7	2016.8.9. (속고 제2016-41호)	

■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⑫	공공공지	- 면적변경 - 1,744 → 1,691.7m²(감 52.3 m²)	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축소

3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가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조서

■ 총괄표

구 분	도면표시	면 적(m ²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총 계		43,527	증) 67.5	43,594.5	100.0	
공동주택용지	A	31,465	증) 60.5	31,525.5	72.3	
도 로 용 지	B	8,933	증) 181.0	9,114.0	20.9	
구 거 용 지	C	1,385	감) 121.7	1,263.3	2.9	
공 공 공 지	D	1,744	감) 52.3	1,691.7	3.9	

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조서

가구 번호	면적 (m ²)			획 지			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획지 번호	위 치	기정	변경	변경후
계	43,527	증) 67.5	43,594.5			43,527	증) 67.5	43,594.5
A	31,465	증) 60.5	31,525.5	1	조양동 1572번지 일원	31,465	증) 60.5	31,525.5
B	8,933	증) 181.0	9,114.0	1	조양동 1575번지 일원	6,462	감) 18.9	6,443.1
				2	조양동 1581번지 일원	1,069	증) 4.7	1,073.7
				3	조양동 1578번지 일원	1,402	증) 195.2	1,597.2
C	1,385	감) 121.7	1,263.3	1	조양동 1579번지 일원	1,385	감) 121.7	1,263.3
D	1,744	감) 52.3	1,691.7	1	조양동 1573번지 일원	901	감) 55.8	845.2
				2	조양동 1574번지 일원	843	증) 3.5	846.5

4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A	A-1	용 도	권장용도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제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			불허용도	권장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25.00%	
		용 적 률	282.00%	
		높 이	29층 이하	
		배 치	관상형	배치계획도 참고
		형태 및 색채	—	
		건 축 선	—	

2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: 실음생략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

1. 속초시 설악동 산78-1임 일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(변경 : 기간연장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경제개발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1월 31일

속 초 시 장

가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변경) 내용

○ 제한지역(변경없음)

구 분	위 치	면 적	비고
설악2유원지(E·F지구) 제척부지	설악동 산78-1(임) 일원	34,280m ²	

○ 제한사유(변경없음)

국민권익위원회 민원해소 협조요구와 유원지 조성계획상 연계개발 등 집적이익의 이익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을 2015. 6. 19. (속초시 고시 2015-27호)로 유원지에서 제척한바 있으나,

설악2(E, F)유원지 제척지역은 국립공원 해제 후 도시지역 편입 시 주변 개발용도와 국립공원간 완충가능 수행을 위해 보전용도로 전환이 요구되었던 지역으로,

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에서 1km
 내외의 집수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적성에 따라 우선 보전대
 상지역(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3-1-5 보전대상지역의 별도 분
 류)으로 분류되어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
 임.

따라서 차후 속초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: 보전녹지지역)지정 시까
 지 국립공원과 주변개발용도간 완충기능 및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
 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.

○ 제한 행위(변경없음)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“보전녹지지역
 내 불허용도”

○ 제한기간(변경) :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간

제한기간		변경사유
당초	변경	
지정고시일로 부터 3년간	지정고시일로 부터 5년간 (2년 연장)	2035 속초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중으로(역세권 개발계획 지연으로 인하여 '18.4.25. 일시중지) 도시관리계획 수립완료시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연장

나. 관계도면: 실음생략

-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
 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하며, 토지소유
 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(건설도시과 033-639-2447)에 비
 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